

의안번호	제 48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6. 10. 11. (제 15 회)	

사천시청맞춤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6. 10. 9.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	----

제출일자 : 1996. 10. 17.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군부대 편입지역인 축동면사무소는 공군 5718부대 시설보안 이중 방책 시설사업 추진으로 사용이 용이한 길평마을 창고로 이전하고, 사무실 면적의 절대부족과 노후화등이 심화된 선구동 사무소는 천주 교회로 이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 축동면사무소 소재지 변경

축동면 길평리 441번지 → 축동면 배춘리 765 - 12번지

○ 선구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선구동 59 - 4번지 → 선구동 116 - 1번지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중 축동면 소재지란 “축동면 길평리 441번지”를 “축동면 배춘리 765 - 12번지”로 하고, 선구동 소재지란 “선구동 59 - 4번지”를 “선구동 116 - 1번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서 정한 축동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은 신청사 건립시까지 적용한다.